

부속 해설서 12,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따른 실질적 문제

개요 및 기본 전제

1. 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권은 몇 가지 국제법상의 제도에 근거하여 인식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이 권리를 다른 어떤 규정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규약의 제11조 1항에 따라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제11조 2항에 따라 “기아와 영양실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즉각적이고 긴급하게 취해야 함을 인식한다. 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권은 모든 권리의 향유를 위한 핵심 권리이다. 이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제11조 1항에 언급된 “자기 자신과 가정”이라는 표현은 이 권리를 특정 개인이나 여성 가장이 이끄는 가정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2. 본 위원회에서는 당사국이 1979년부터 제출한 보고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축적했다. 위원회에서는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지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함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이 권리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지배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권리 실현의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은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 일반 주석의 목적은 본 위원회에서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주요 문제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주석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이 규약의 제11조에 언급된 식량에 관련된 권리를 더 정확히 정의해 달라는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회원국들의 요청과, 이 규약의 제11조에 언급된 특정 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정상회의 행동계획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달라는 특별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상기 요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인권위원회 및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권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관련 보고서 및 문건을 검토했고, 1997년 제17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놓고 국제 비정부기구가 작성한 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권에 관한 국제 윤리규범 초안을 고려하면서 하루간 일반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권으로서의 권리에 관하여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1997년 12월 제네바에서 단독으로 열었던 회의와 UN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1998년 11월 로마에서 공동 주최했던 전문 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그들의 최종 보고서를 주목하였다. 1999년 4월 본 위원회는 제26차 제네바 회의에서 OHCHR이 주최하고 UN 행정조정위원회/영양 소위원회가 조직한 “식량 및 영양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본질 및 정치학”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4. 본 위원회는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제인권장전에 명시된 숭고한 다른 권리들의 실현에도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이는 적절한 경제, 환경, 사회 정책이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채택되어 빈곤을 뿌리뽑고 만인을 위한 인권의 실현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구현되는 권리인 만큼 사회 정의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5. 국제 사회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끊임없이 재확인하였지만 이 규약 제11조에 명시된 기준과 세계 도처의 실제 상황 간에는 심각한 간극이 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8억4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자연 재해, 점증하는 내전과 일부 지역에서의 국지전 및 식량의 무기화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본 위원회는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더 심각하지만 동시에 저영양 상태 및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 및 기아로부터 해방될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선진국에서조차 일부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의 근원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가용한 식량에 대한 접근의 부족으로서,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인구 대부분을 괴롭히는 빈곤이다.

제11조 1, 2항의 규정 내용

6.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모든 남성과 여성 및 아동이 개인 혹은 집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적당한 식량이나 그의 조달에 대한 물리적 및 경제적 접근이 상시 가능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 따라서,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의 열량, 단백질, 기타 특정 영양소를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과 같이 협소하거나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당사국은 이 규약의 제11조 2항에 규정된 기아를 줄이고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핵심적인 의무를 지닌다. 이는 자연 및 기타 재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식량 가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적절성 및 지속성

7. **적절성**이라는 개념은, 가용한 특정 식량이나 섭생이 이 규약 제11조의 목적을 위한 특정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특히 식량권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지속성**의 개념은 적당한 식량 또는 식량 **안보**의 개념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식량은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들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적절성”의 명확한 정의는 지배적인 사회, 경제, 문화, 기후, 생태 및 기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성” 개념은 장기적인 가용성 및 접근성 개념을 포함한다.

8. 본 위원회에서는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핵심 내용이 암시하는 것, 즉 개인이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지 아니하면서 주어진 문화에서 수용되는 수준의 섭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량의 양적 및 질적 가용성과, 그러한 식량의 가용성은 지속 가능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9. **섭생 필요**란 섭생이라는 전 개념이 신체 및 정신의 성장, 발전 및 유지 그리고 전 인생 주기에 걸쳐 성별 및 직업에 따른 인간의 생리학적 필요에 맞는 신체활동 수행에 필요한 영양소의 총합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다양한 섭생과 적절한 식량 소비 및 모유 수유를 포함한 영양 공급 형태의 유지, 적용 및 강화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취하면서 동시에 식량 공급의 가용성 및 접근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섭생의 구성 및 섭취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몸에 해로운 물질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는 식량 안전과 다양한 보호 조치가 공공 및 민간 분야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불량한 가공 그리고/또는 식품 공급 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이거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식품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 독소의 파악, 예방 및 제거를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11. **문화 또는 소비자 수용성**이라 함은 식량과 식량 소비에 부가되는 비영양적 가치를 인식하고 접근 가능한 식량 공급의 특성에 대해 소비자 우려 사항이 있음을 알릴 것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12. **가용성**은 농지 또는 기타의 자연 자원에서 직접 얻은 식량을 섭취하는 것과, 식량을 생산지로부터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잘 작동하는 유통, 가공 및 시장 체계를 이용하는 것의 2가지 가능성을 지칭한다.

13. **접근 가능성**에는 경제적 및 물리적 접근 가능성의 2가지가 있다. 경제적인 접근 가능성이라 함은 개인이나 가정의 적당한 섭생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식량의 구입 비용이 다른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한 비용을 위협하거나 줄여야 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접근 가능성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인간의 모든 식량 조달 형태나 권리에 적용된다. 농경지가 없거나 특별 저소득 계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은 특별 계획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물리적 접근 가능성은 유아나 아동, 노인, 장애인, 불치병 환자 및 정신 장애를 포함한 만성 질환자와 같은 신체적 취약 계층에게 적당한 식량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연 재해 피해자, 재해 빈발 지역 거주자 및 기타 특별 취약 계층에게는 특별한 관심은 물론 식량에 대한 접근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특히 조상 대대로 살아 오던 지역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는 원주민들이 특별 취약 계층이 될 수 있다.

의무와 위반

14. 당사국의 법적 의무의 특성은 이 규약의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일반 주석 3번(1990)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주된 의무는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여 완전히 실현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최대한 신속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 모든 당사국은 자국민 전원이 기아로부터 해방될 만큼 충분하고 영양적으로 적당하며 안전한 최소한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15.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는 다른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당사국에게 **존중, 보호** 및 **실현**이라는 3가지 유형 또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실현** 의무는 **촉진**과 **제공**의 2가지 의무를 통합한다[1]. 적당한 식량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을 **존중할**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그러한 접근을 저해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적당한 식량에 대한 개인의 접근을 빼앗지 않도록 할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현(촉진)** 의무에 따라 당사국은 식량 안보를 포함하여 자신의 생계를 확고히 할 조치와 자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 및 활용을 강화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시, 당사국 정부는 그러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실현(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는 자연 및 기타 재해의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6. 당사국의 수준별 의무 조치 중 일부는 더 긴급한 성격을 띠 수 있는 반면 다른 조치들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권의 완전하고도 점진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17. 이 규약의 위반은 당사국이 최소한 기아로부터의 해방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에 식량권의 위반으로 간주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 당사국이 규약 준수를 할 능력이 없었는지 의지가 없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국이 식량에 대한 자체적 접근이 불가능한 국민들에게 식량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자원상의 제약이 있었다면 그 당사국은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모든 노력을 실시했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는 일반 주석 3번에서도 이미 명시된 바 있듯이 당사국이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이 규약의 제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의해 의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따라서 그 근거와 함께 필요한 식량에 대한 가용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얻지 못했음도 증명해야 한다.

18. 아울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연령, 종교, 정치 및 기타 의견, 국적이거나 사회 계층, 재산, 출생 또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동등한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하거나 저해할 의도나 그러한 영향을 가지는 어떠한 상태를 이유로 하는 식량과 식량 조달의 수단 및 권리에 대한 접근에 발생한 차별은 이 규약의 위반에 해당한다.

19. 식량권 위반은 당사국의 직접적인 행위는 물론 당사국의 통제가 불충분하게 미친 단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식량권의 지속적인 향유에 필요한 입법의 공식적인 철회 또는 계류, 법안 자체에 대해서나 예방적이거나 상관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식량에 대한 접근 제지, 내전이나 기타 긴급 상황에서 식량 원조에 대한 접근 제지, 식량권과 관련된 기존의 법적 의무와 명백히 상충되는 법안이나 정책의 채택,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식량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제하지 못한 행위 또는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나 국제 기구와 협약을 체결할 때 식량권과 관련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누락한 것 등이 포함된다.

20. 당사국만이 이 규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규약의 최종적인 준수 의무를 지니는 반면, 모든 사회 구성원 즉 개인, 가정, 지역 사회,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민간 기업들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외 민간 기업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 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윤리규범의 틀 내에서 사업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국내에서의 이행

21.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과 수단은 당사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당사국은 자국에 맞는 접근 방식을 재량껏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규약에서는 당사국이 자국민 모두가 기아로부터 해방되고 최대한 빨리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 존중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식량과 영양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전략과 아울러 정책과 적절한 기준의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용한 자원이 있는지 또 그 자원의 가장 비용 효율적인 활용법은 무엇인지도 규명해야 한다.

22. 전략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유추하고 본 일반 주석의 제15항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의 수준과 특성과 관련하여 표현된 대로의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이 있으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조율이 활성화되고 관련 정책 및 행정 결정은 이 규약의 제11조에 명시된 의무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23. 식량권 관련 국가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서는 책임성, 투명성, 국민의 참여, 지방분권, 입법 능력 및 사법부 독립 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빈곤 퇴치 및 모든 국민의 만족스러운 생계 확보를 포함하는 인권 실현에는 훌륭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24. 전략 수립을 위한 대표적인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고안되어서 모든 가능한 국내의 식량 및 영양 전문 자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전략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위한 책임 소재와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이 전략은 안전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및 소비를 포함하는 식량 체계의 모든 측면에 관한 핵심 문제와 방안을 다루어야 하며 보건, 교육, 고용 및 사회 보장 영역에 관한 방안도 다루어야 한다. 국가, 지역 및 가정 수준에서 식량 확보를 위한 자연 및 기타 자원의 가장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사용법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 이 전략은 식량 및 식량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토지 및 기타 자산, 신용, 자연 자원, 해당 기술에 대한 상속권 및 소유권을 포함한 경제 자원에 대한 완전하고도 동등한 접근이 특히 여성에게도 확보되어야 하며, 근로자 및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이 규약의 제7조 (a)(ii)항 참조) 및

자영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토지 소유권(산림권 포함)에 관한 등기도 유지하고 포함해야 한다.

27. 국민의 식량 자원권 보호 의무의 일환으로 당사국은 민간 기업과 시민 사회의 활동이 식량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 긴축 경제, 경기 침체, 기후 조건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해 당사국이 심각한 자원난에 직면할 경우 특히 취약 계층이나 개인의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기준 및 기본 입법

29. 상기 언급한 국가별 전략을 이행할 때 당사국은 향후의 국내외 모니터링을 위한 검증 가능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국가 식량권 전략 이행 주요 도구로서의 **기본법**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법에는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특히 시민 사회와 민간 기업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포함한 목표 달성의 방법에 대한 개요, 목표 달성 절차를 위한 제도적인 책임 소재, 국가 모니터링 메커니즘, 가능한 자원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기준과 기본 입법 개발에 시민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0. 요청이 있을 시 해당 UN 계획 및 기구는 기본법 초안 작성과 검토를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농업 입법에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보유 및 축적하고 있다. UN 아동기금(UNICEF)은 모유 수유 보장 입법을 포함한 모자 보건에서부터 유아 및 아동의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관한 입법과 모유 대체물 마케팅 규제 등과 관련하여 상기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모니터링

31. 당사국은 전국민의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 실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 및 유지하여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어려움을 규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규약의 제2조 1항 및 제23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입법 및 행정 조치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

해결안 및 책임 소재

32.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개인이건 집단이건 상관없이 국내외의 유효한 사법적 및 기타 적절한 해결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침해 피해자는 누구나 복직, 손해 배상 및 동일한 침해의 재발에 관한 만족스러운 확신 또는 보장과 같은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옴부즈맨과 인권 위원회에서는 식량권 침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33. 국내법 질서에 식량권을 인정하는 국제 제도를 통합시키거나 그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해결 조치의 범위와 영향을 상당히 확장시킬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 법정에서는 이 규약의 의무에 따라 식량권의 핵심 내용에 대한 침해 사례를 직접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34.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임무를 수행할 때 식량권 침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 권장된다.

35. 당사국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서 취약 집단을 돕는 인권운동가 및 시민단체 회원의 일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제 의무

당사국

36. UN 헌장 제56조, 이 규약의 제11조 2.1항과 제23조에 명시된 특정 조항의 내용 및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로마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사국은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공동 및 국가별 노력을 취함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규약을 이행할 때 당사국은 다른 국가에서의 식량권 향유를 존중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식량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며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국은 국제 협약에서 필요시 적당한 식량에 대한 권리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제도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37. 당사국은 식량 금수조치나 그와 유사하게 타 국가의 식량 생산 조건 및 식량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는 여하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식량은 정치 및 경제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회는 일반 주석 8번에 언급된 경제 제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존중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 위원회의 입장을 상기한다.

국내외 기구

38. 당사국은 UN 헌장에 따라 위기 시에 난민이나 국내 이재민을 위한 지원을 포함한 재난 구호 및 인도주의적 지원에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협력할 책임이 있다. 모든 당사국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이에 공헌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WFP)과 UN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UNICEF와 FAO의 역할이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식량 지원의 우선순위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주어져야 한다.

39. 식량 지원은 지역 생산자나 시장에게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혜자들의 식량 자급 회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대상 수혜자들의 필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식량 무역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물은 안전하고 수혜자들의 문화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UN 및 기타 국제 기구

40. UN 개발지원계획(UNDAF)을 포함한 UN 기구가 당사국에서 식량권 실현을 촉진하는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식량권 실현을 위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할 경우 다양한 시민 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의 통일성 및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다. 식량 기구인 FAO와 WFP 및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은 UNDP, UNICEF,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과 함께 더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와 함께 국가 수준에서 식량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 기구의 전문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

41. 국제금융기구,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대출 정책 및 신용 약정과 부채 위기를 다루기 위한 국제 조치를 취할 때 식량권 보호에 더 큰 관심을 쏟아야 한다. 본 위원회의 일반 주석 2번의 제9항에 따른 식량권 보호를 위한 구조 조정 계획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

[1] 원래는 존중, 보호, 지원/실현이라는 3가지 수준의 의무가 제안되었다(*Right to adequate food as a human right(적당한 식량에 대한 인권으로서의 권리)*, Study Series No. 1, New York, 1989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89.XIV.2) 참조). “촉진”을 중간 단계 범주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3가지 수준의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